디에이치 반포124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안내문

THE H

1 공급대상

■ 단 지 명 : 디에이치 반포124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5층 ~ 지상 35층 50개동, 총 5,007세대 중 일반분양 1,801세대
[특별공급 930세대 중 기관추천 165세대 예정]
■ 입주시기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세대)

주택형 (전용면적)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총 세대수	기관추천 배정세대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59.9800	59A	59.9800	21.4300	81.4100	97.9600	179.3700	125	13
59.9900	59B	59.9900	21.3500	81.3400	97.9700	179.3100	154	16
80.7200	80A	80.7200	27.2500	107.9700	131.8400	239.8100	5	-
80.6200	80B	80.6200	27.7700	108.3900	131.6700	240.0600	18	-
84.9800	84A	84.9800	28.0900	113.0700	138.7900	251.8600	512	50
84.9900	84B	84.9900	29.5100	114.5000	138.8200	253.3200	821	86
84.9600	84C	84.9600	29.2200	114.1800	138.7600	252.9400	25	-
합계								165

2 기관별 배정 세대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내 공급)

구분		59A		59B		80A		80B		84A		84B		84C		합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국가 유공자 등		2	10	3	15	-	-	-	-	8	40	14	70	-	-	27	135
장기복무 제대군인		2	10	3	15	-	-	-	-	8	40	14	70	-	-	27	13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10	3	15	-	-	-	-	8	40	14	70	-	-	27	135
장애인	서울특별시	1	5	1	5	-	-	-	-	4	20	6	30	-	-	12	60
	경기도	1	5	1	5	-	-	-	-	3	15	5	25	-	-	10	50
	인천광역시	1	5	1	5	-	-	-	-	3	15	5	25	-	-	10	50
중소기업 근로자		2	10	2	10	-	-	-	-	8	40	14	70	-	-	26	130
해외건설 근로자		2	10	2	10	-	-	-	-	8	40	14	70	-	-	26	130

3 분양가 및 분양조건

※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의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분양일정(예정)

※ 특별공급 청약접수 일정은 업무추진 중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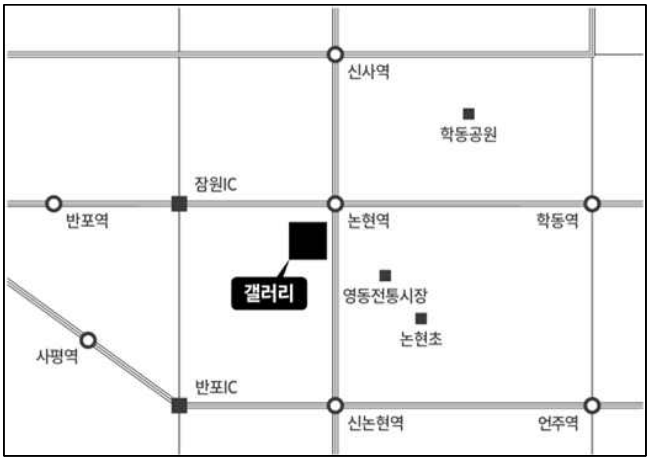
구분	분양일정(예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2026.11.27.(금) 예정	• 디에이치 반포124 홈페이지(https://the-h-banpo124.com)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6.12.07.(월)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09:00~17:30) • 갤러리 방문 접수 시 (10:00~14:00) 인터넷 취약계층에 한함
당첨자 발표	2026.12.16.(수)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계층에 한하여 신청 구비서류(자격확인 서류) 또는 청약자 본인 공동인증서 지참 시 갤러리 방문접수(10:00~14:00)가 허용됩니다. (은행창구 접수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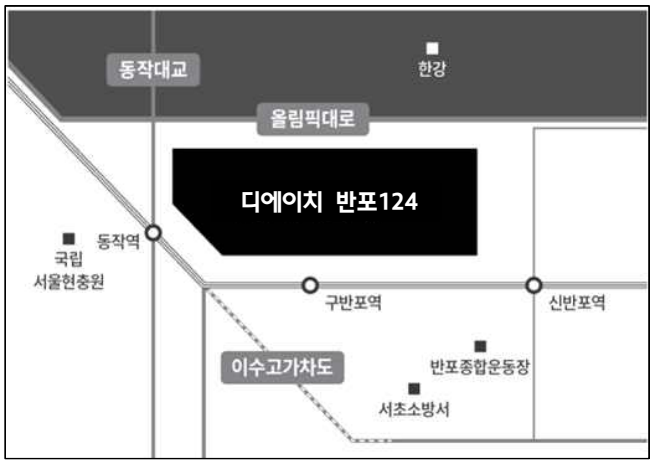
5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요건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기준</td><td>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 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또는 부적격 판명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전혼자녀 등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td></tr>
<tr><td>청약자격
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분</th><th>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자 /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하며,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잔여 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기타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td></tr>
</table>

6 기타사항



갤러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07-5



현장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

대표번호	02-6677-6080
홈페이지	https://the-h-banpo124.com